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01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안상훈 · 김미애 · 이소희
이종배 · 권영세 · 안철수
박상웅 · 조지연 · 고동진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대 청소년이 챗봇을 통한 상담 도중 자살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울·불안 등을 겪는 사람에게 정신적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자살심리를 유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공지능사업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 및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이를 즉

시 감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용자의 입력 내용에 반응하는 결과물을 글·소리·그림·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생성해 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상담·지원 등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6(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용자의 입력 내용에 반응하는 결과물을 글 · 소리 · 그림 ·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생성해 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상담 · 지원 등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안내 체계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